

의안번호	제2800호
의결 연월일	2024. 7. 25. (제295회)

의결사항	원안가결
------	------

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고성군수
제출연월일	2024. 7. 1.

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800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4. 7. 1.

제 출 자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각종 위원회 보궐위원의 임명 및 임기를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보궐위원의 임명 및 임기 명시(안 제8조제3항)

나. 조례 제명이 잘못 인용된 40개 조례에 대해 부칙에서 함께 개정
(부칙 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
· 특이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16473(2024. 4. 19)]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4-758호

가) 예고기간: 2024. 4. 30. ~ 2024. 5. 20.(20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5) 비용추계(미첨부 사유)서: 붙임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할 수 있고,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고성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 본문 중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②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11 중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③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 중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④ 고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중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⑤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 중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⑥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 중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각각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⑦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⑧ 고성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중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⑨ 고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
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 중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⑩ 고성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 중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⑪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 중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⑫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 중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⑬ 고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 중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⑭ 고성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⑮ 고성군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중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고성군 각종

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⑯ 고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⑰ 고성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중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⑱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⑲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 중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⑳ 고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 중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㉑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 중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㉒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 중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㉓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중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㉔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중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각각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㉕ 고성군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㉖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중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㉗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 중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㉘ 고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 중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㉙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중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㉚ 고성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 중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㉛ 고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 중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㉜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 중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㉝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

한다.

제9조 중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③④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중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③⑤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 중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③⑥ 고성군 중증장애인 목욕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본문 중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③⑦ 고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③⑧ 고성군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중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③⑨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중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④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중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③ ~ ⑥ (생략)</p>	<p>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③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할 수 있고,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④ ~ ⑦ (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)</p>

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안은 적절하지 않은 조항을 정비(보완), 현실반영 하는 등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함.

작성자: 기획예산담당관 최 대 석

■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
 되,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 이 경우,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수의 10분의 3 이하로 구성하
 도록 한다.

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
 3년 이내로 한다.

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
 의해야 하며,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
 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
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1. 고성군의회의원(이하 “군의원”이라 한다)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
2.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
3.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

④ 군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
 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 다만, 위원회의 특성
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부서는 여성업무담당 부서와
 미리 협의해야 한다.

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, 실무
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.

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.